

2013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감 사 실

2013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I 감 사 목 적

-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대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실태, 회계집행절차, 계약 및 공사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I 감 사 개 요

☐ 근 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3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3. 7. 15 ~ 7. 24 (8일간)

☐ 감사범위 : 2011. 6. 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합리성
- 예산·회계 업무처리의 적정성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실태
- 계약 및 공사처리 과정 실태
- 민원사무처리(처리기한, 수수료 징수,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실태

III 감사결과

1. 총괄

□ 감사처분내역

○ 행정상 조치

- 시정
- 주의

총 10건

3 건

7 건

○ 재정상 조치

- 추징

총 1건

68천 원/3건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계	10	1	1	
1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부적정	주의			
2	성매개감염병 검진 대상업소 지도점검 부적정	주의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4	유류수불대장(주유관리대장) 관리 소홀	주의			
5	민간위탁운영업무 부적정	주의		훈계/1명	
6	수의계약내역 공개 지연	주의			
7	지역개발채권(공채) 미매입 및 금액 부적정	시정			
8	민원사무 및 수수료징수 업무처리 소홀	시정	추징 68,500원/3건		
9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0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시정			

2. 총 평

- 연수구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 보건사업, 방역소독, 건강관리버스 운영, 금연서비스 지원, 예방접종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건강도시 연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보건소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는 원스톱 건강관리시스템을 갖춘 건강관리버스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기초 검사와 체력 측정, 만성 질환 관리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1년 6월 연수구 보건소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또한, 송도동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보건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중 송도동 9-11, 9-12번지 복합문화시설 신축 건물 1, 2층을 송도보건지소로 운영할 예정임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2011년 종합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인사·복무관리, 계약·공사업무, 민원사무 등의 보건소 행정 전반에 대해 총 1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3, 주의7), 재정상 조치(추징 68천원), 신분상 조치(훈계1)를 처분 요구함
-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IV

주요 지적 사항

1

보건·의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부적정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제10조(경제적 부담의 증감)에 따라 출산지원 모자보건사업 시책의 일환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과 건강한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산후조리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신청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 특히 보건소 이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내 병·의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청 안내를 강화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2013년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신문, 연수한마당, 구홈페이지, 관련기관(병·의원, 산후조리원)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구홈페이지(보건소 홈페이지)에 수정게시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계획대로 홍보한 실적이 없는 등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2

보건·의료

성매개 감염병 검진대상업소 지도점검 부적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3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19조(건강진단)에 의하면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보건소에서는 2011년, 2012년 성매개감염병 검진 대상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각 97개소, 99개소를 점검하여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사항을 확인하여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고 성매개감염병 발생예방과 타인에게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여야 함에도,
- 보건소에서는 2011년 검진대상 97개소중 25개소만 점검하였고 2012년 검진대상 99개소중 61개소만 점검한후 폐문한 업소를 포함한 74개소를 출장복명하여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3

인사·복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권자)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면 근무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를 구청장 명의로 계약했어야 하나 보건소장 명의로 계약하는 등 채용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 2012년 7월 2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무기계약근로자 5명 및 기간제근로자 26명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4

일반행정

유류수불대장(주유관리대장) 관리 소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유류사용정산)에 의하면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동법 제23조(기록관리)에 의하면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07가5485 마티즈 차량, 86도6428 포터Ⅱ차량은 각각 2012.10.15. 30리터 1회 주유하였음에도 2회 주유 결재한 것으로, 2012.11.22. 40리터 1회 주유

하였음에도 2회 주유로 것으로 관리해오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5

계 약

민간위탁운영업무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연수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10.12.24.) 민간위탁금(307-05)에 따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금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사업자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불이행시 제재 등)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수탁기관 선정의 방법 등은 연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민간위탁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12.18(화)14:00~16:00 치매보호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알코올 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적격심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적격심사 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심사를 하던 중 일부 심사위원이 치매보호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표에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심사점수를 기재하여 제출한 심사표 총 3건에 대하

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심사점수에 반영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한 민간위탁적격심사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 위배되는 등 민간위탁운영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

6

계 약

수의계약내역 공개 지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 공개대상 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 혈액검사시약 구입 등 총 17건의 공사·물품·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7

계 약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및 금액 부적정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은 대금청구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채권(공채)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2011. 7. 15일 통합건강증진센터 전화기설치 케이블공사계약 외 1건에 대해 공채 매입 대상임에도 지역개발공채를 미징구하였으며, 2011. 7. 15일 통합건강증진센터 전화기 및 설치부대 물품 구입 외 1건에 대하여는 적정 매입금액 보다 초과된 매입필증을 징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8

민원사무

민원사무 및 수수료 징수업무 처리 소홀

- 보건소에서는 2011.6.1.부터 2013.5.31 사이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변경신청,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등의 민원사무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에 의거 인증제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였음
- 관련법규에 의거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등과 발급 제증명,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 요액을 징수하며, 또한 징수방법은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2011.6.1.부터 2013.5.31 사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제기 의한 수수료 소인이 누락시켰거나 금액을 잘못 징수하였으며, 민원처리담당자에는 대한 수수료 징수여부의 확인 없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사무 및 수수료 징수 등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시행할 때에는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또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공사시행을 위한 품의(계획)시 견적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견적서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는 착·준공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과정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담당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계법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정기하자검사)에 따라 공사발주관리부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 2회이상 정기하자검사(4월, 10월)를 실시해야 하고, 동 지침 제4조(최종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최소한 1개월 전에 정기하자검사, 수시검사와는 별도의 최종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발주·시행하여 완료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공사 등 9건에 대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 정기, 수시, 최종정밀 등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하자검사 및 공사완료 후의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예산절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

연수구보건소 공용차량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 ❖ 조달청에서 주유소 주입용 공공부문 유류(차량용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계약자 : (주)지에스칼텍스, 제휴카드사 : (주)신한카드)하고 협약된 주유소를 통해 공급<시행일 2012. 10월>
- 관내 협약주유소 : 태화석유주유소 등 5개소

□ 추진배경

-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민생물가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시책 적극 동참(조달청 자재장비과-14805, 2012. 9. 28호 의거)
- 매년 관용차량유류 입찰시 무응찰에 의한 유찰로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 추진현황

- 그 간 연수구보건소 연간 유류 계약 현황

연도	계 약 절 차		최종결과 (단가기준)	최종계약체결까지 소요기간
	방법	결과		
2011	입찰	유찰(무응찰)	수의계약체결 (석유공사 제공 주유소 주별 유류 단가기준)	평균 2.5개월 소요
2012	입찰	유찰(무응찰)		

-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안내에 따른 이용협조(조달청) '12.09.28
-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신청계획수립(보건행정과-6956) '13.04.12
 - 대상차량 : 관용차량 및 방역소독용 유류
 - 대상유종 : 휘발유, 경유

- 할인혜택 : 구입금액의 2.866% 즉시 할인 및 유류할인과 별도로 카드이용금액의 1.1% cash-back 포인트 적립
- 카드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하여 카드관리담당자 지정을 통해 유류구매 카드발급대상과 카드사용부 작성 및 보관 등 관리 철저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신한카드) '13.04.12
- 유류공동구매이용 및 절감내역
 - 주유기간 : 2013. 4. 21 ~ 7. 20(3개월)

(단위:원)

유종구분	횟수	주유량	실거래금액	결제금액	할인금액	비고
계			15,964,162	15,505,830	458,332	2.87%절감
경 유	79회	8,210L	13,869,589	2,034,090	397,849	
휘발유	66회	1,107L	2,094,573	13,471,740	60,483	

□ 기대효과

- 유류구매를 위한 연간단위 입찰 절차 불필요 및 현장 결제방식에 따른 대금정산 업무 간소화로 예산과 행정력 절감 효과